



# 연례 학생 신상정보와 학생 사생활 보호 안내

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 
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 
Rockville, Maryland 20850  
MCPS Regulation JOA-RA:학생 기록(Student Records)

MCPS Form 281-13  
2019년 7월  
1/2

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(FERPA)에서의 여러분의 권리에 대한 안내는 뒷면을 봅시다. (20 U.S.C.§1232g; 34 CFR Part 99)

## 개인 신상 정보

학교는 우등상인 어너롤 및 수상 발표 등을 신문이나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(MCPS) 웹사이트에서 발표할 때 "신상 정보(directory information)"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학생의 이름, 주소, 전화번호는 학부모/교사회(PTA)를 통해 제공될 경우도 있습니다. **학교가 신상정보 공개제한 요청을 받지 않을 경우**, 학교는 사전협의 없이 제공하신 신상정보를 제공합니다.

개인신상정보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: 학생과 학부모 성명, 주소, 이메일 주소, 전화번호, 학생 생년월일, 출생지, 전공분야, 학년, 공식적으로 인정된 활동 및 스포츠 참여, 수여받은 학위와 시상(우등상 포함), 학생이 다닌 가장 최근의 교육기관, 출석일, 사진 및 사진류, 스포츠팀 구성원의 체중과 신장, 그리고 다른 유사한 정보.

개인신상정보 공개제한을 원하는 경우는 다음 양식을 작성하시어 **2019년 9월 13일까지** 학교에 제출해 주십시오. 이 사본은 [MCPS 웹사이트](#)에서 보실 수 있으며 한국어를 포함한 스페인어, 불어, 베트남어, 중국어, 암하리어로의 번역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

이 양식은 매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.

**2019년 9월 13일(금)**까지 공개제한양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, 학교는 부모님이 학생의 '개인신상정보 공개를 허락하는 것'으로 간주하게 됩니다.

추후에 결정을 번복하고 싶으신 경우는 학교로 연락합니다.

2019년 9월 13일 후에 등록된 학생은 등록 시 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.

##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2019-2020 학사연도 개인신상정보 공개제한 신청서

다음 두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.

-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마십시오. (위의 정의 참조)
- 개인 신상 정보의 다음 항목을 공개하지 마십시오. (다음 중 해당되는 곳 모두에 표시하십시오)
  - 이름     전화번호     사진     주소     생년월일
  - 출생지     이메일 주소     학부모/후견인 이름     학년 수준

### 개인정보 공개제한의 예외사항:

- PTA 주소록에 신상 정보 제공     우등생(Honor Roll) 발표용으로 신상 제공     이어북의 사진 제공

학생 이름 \_\_\_\_\_ 학년 \_\_\_\_\_ 학생번호 \_\_\_\_\_

학교 \_\_\_\_\_

학부모/후견인/해당 학생 서명 \_\_\_\_\_ 날짜 \_\_\_\_/\_\_\_\_/\_\_\_\_

학생 신상 정보 제공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, 학부모/후견인은, 학교가 학교에서의 일상생활이나 학업을 위해 정보를 제공해야 할 때마다, 학부모의 추가 허락이 없이 학생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입니다.

## FERPA에 따른 여러분의 권리 안내

MCPS 학생의 학부모로서, 여러분 자녀의 교육기록에 대해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(FERPA-1974년에 제정된 가족의 교육적 권리 및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 조항)와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(COMAR) 13A.08.02. **에 명시된 바와 같은 특정 권리가 있습니다.** 이 권리는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(MCPS) **규정, Regulation JOA-RA, Student Records(학생의 기록: [www.montgomeryschoolsmd.org/departments/policy/pdf/joara.pdf](http://www.montgomeryschoolsmd.org/departments/policy/pdf/joara.pdf))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.**

- 1. 학생기록의 검토** 여러분은 요청을 할 경우, 요청 후 45일 이내에 자녀의 교육기록을 점검하고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. MCPS는 학생의 신분, 평가, 배치에 관련된 심리 시, 서면요청을 받은 후 학교의 실천가능한 10일 이내에 요청을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학교는 학생의 기록을 열람할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. 학교장/대리인이 검토할 때 함께 동석합니다.
- 2. 학생의 기록 수정** 자녀의 기록이 정확하지 않거나 잘못된 경우, 또는 자녀의 사생활을 침해할 경우, 서면으로 기록의 수정을 학교에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. MCPS Regulation JOA-RA, Student Records(학생 기록), 적절한 경우, 요청을 진행하는 과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는 공청회도 포함됩니다. 성적은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- 3. 학생 기록 공개** 학생 기록 공개 연방, 주 정부 법으로 동의없는 공개를 규정하지 않는 한, 자녀의 교육기록의 개인 신상을 MCPS가 공개하기 전 서면으로 공개를 승인할 권리가 있습니다. 신상정보 공개 지침 및 비공개를 선택 양식에 대한 안내는 뒷면에 있습니다. 추가로 MCPS 내 학교 행정직원, 교사, 교직원에게 적절한 교육적 필요\*\*에 근거하여 학생의 정보를 알아야 할 경우, 학부모님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. 또한 다음의 경우, MCPS 직원으로 직업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, 동의 없이 학생 신상을 볼 수 있습니다: 학교의 양호 담당 교사와 보건 담당 교사, 학교의 보안담당자,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 임원, MCPS와 계약이 되어있는 외부기관 고용인으로서 MCPS에서 일할 경우(예: 변호사, 회계 감사관), 또는 MCPS 위원회와 교직원의 업무를 돕는 학부모/후견인과 다른 봉사자들.
  - 만약 학생의 등록이나 전학을 목적으로 요청이 들어올 경우, MCPS는 다른 학교와 다른 교육구 또는 고등학교 이후의 교육기관 교직원에게 학부모의 동의 없이 학생의 교육기록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. 추가로 MCPS는 명시된 정부기관을 포함해 FERPA가 인가할 경우, 리서치 프로젝트 승인, 사법 명령 준수, 합법적으로 발급된 소환장 또는 건강이나 안전에 비상상황일 경우에 학생기록부의 개인신상정보를 서면동의서 없이 공개할 수 있습니다.
  - 자세한 안내는 [MCPS 웹사이트](#) 또는 **각 학교에 있는 MCPS Regulation JOA-RA, Student Records**를 통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
- 4. U.S. Department of Education에의 이의제기** FERPA에서의 여러분의 법적인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될 경우 또한 MCPS 재심 경로를 통한 상황해결의 노력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믿어질 경우는 U.S. Department of Education(연방 교육부)의 Family Policy Compliance Office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주소: 400 Maryland Avenue, SW, Washington, DC 20202-5920, 전화:1-800-872-5327)

\*자격이 있는 학생으로의 권리(Rights of Eligible Students) 이 권리는 18세인 학생 또는 고등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의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. 학생이 자격이 있는 학생일 경우에도 부모에게 의존적인 관계로 명시되어 있는 학생일 경우, 해당 학생의 부모/후견인은 학생의 사전동의 없이 학생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\*\*학교관계자가 학생의 교육기록을 검토할 경우, 타당한 교육적 필요에 근거합니다.